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외 근거 마련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72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외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Ⅲ. 검토의견

1.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품질·규격 검사 및 유해물질 혼입 관련 검사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8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 ----- ----- ----- ----- ---.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①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에 대해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0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7.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 개요(법 제88조제1항) 】

◆ 정부 비축·수매 수산물 등 검사

☐ 목적

- 주생산 시기의 대중성 어종*을 수매·비축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도모

* 품목: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천일염·삼치(예비)·마른 오징어(예비)

☐ 검사대상 :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검사방법

- 매년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에서 수립하는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 시행요령’의 품목별 수매품 품질 표준에 따라 검사 실시
- 수매 대상품의 품질검사는 수매 중도매인 또는 수협중앙회의 전담 직원 입회하에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실시
- 냉동품 검사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실시하며, 검사 수량은 보관창고의 대표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로 같음

☐ 불합격품 처리

-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불합격된 제품은 그 결과를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 장에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요청

◆ 수출 수산물 검사

☐ 검사대상

-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 상대국의 증명서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검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 검사종류 및 항목

- (서류검사) 검사신청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
- (관능검사) 오관에 의하여 외관, 색깔, 이물, 선도 등 적합 여부 판정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중금속, 마비성 패독, 항생물질,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 검사증명서 발급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 위생(건강)증명서 발급
-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 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요구에 따라 발급(위생증명서, 분석증명서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유통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³⁾하고 수출·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 등에 대한 수출·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선원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톤수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총톤수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⁴⁾ 적용

위법한 노동력 착취를 통하여 생산한 수산물이 적법하게 생산된

3) 미국은 2026년 7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도 강제노동 결과물의 역내 시장 출시·수출을 금지하는 규정(Regulation (EU) 2024/3015)을 2024년 12월 12일 발효시켜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4)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수산물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어업 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22년 ~ ‘26년) 수산분야 강제근로(외국인 포함) 적발 현황 >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 제8조(폭행의금지)

(기준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연도별	위반건수	관할관서	업종	피해자 국적	적발내용
2022	1건	서산	어선	한국인	제8조(폭행)
2023	1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4	4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어선	미상(익명)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5	1건	목포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6.6	2건	광주	염전	한국인	제7조(강제노동)
		광주	염전	한국인	제8조(폭행)

※ 고용노동부 제공, 해양수산부 작성·제출

□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 및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문의 법적 효과와 후속절차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88조제1항 본문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품질·규격 검사 및 유해물질 혼입 관련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

는데, 검사신청인이 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수산물도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미검사 상태로 남게 됨.

현행법 제95조⁵⁾에 따르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폐기·판매금지 요청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처리 규정과의 연계가 불분명하여 처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 둘째, 강제노동 등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등에 대해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대외 수출 및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이나, 개정안의 문언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라면 “검사하지 아니한다”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와 같은 의무규정 형식이 이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6)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노동 위반 관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재량규정으로 둘 경우 동일하게 강제노동 위반이 확인된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예측가능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제재로서의 실효성도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강제노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제외에 대해 “위반하여 생산한”이라고만 규정하여, 검사 제외가 ①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지, ② 단순한 위반사실의 적발만으로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관련 규정 위반 혐의만으로 검사를 제외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 확정 여부·기준시점 등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검사 거부 및 검사증명서 미발급은 해당 수산물의 정부 구매·비축 및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단순한 신고나 위반 의심 또는 조사 단계만으로 조치할 경우 생산자·수출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의 객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확인한 즉시 검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강제노동 금지 규정 위반 관련 개정안의 요건 방식 비교 >

구 분	해당 법률안(조항)	요건 방식
면허·허가 결격사유	수산업법 개정안 §9,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12,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24,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8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형 확정)
지원자금 회수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49의2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형 확정)
검사 제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88① (본 개정안)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형 확정 불요)

- 넷째, 개정안은 특정 수산물이 “위반하여 생산한” 것임을 확인·통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검사 제외의 발동요건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⁷⁾가, 「선원법」 위반은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⁸⁾ 및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인 반면,

7)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8) 「선원법」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및 검사 제외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임.

그런데, 개정안에는 ① 위반사실(또는 형의 확정)을 확인하는 절차, ② 위반과 특정 검사대상 수산물을 연계하여 확인하는 방법, ③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정보를 통보받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확인·통보 절차가 없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강제노동 규정 위반과 관련한 검사 제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집행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행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간 통보·자료제공에 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9).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강제노동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 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해양수산부 의견]

- 현행 체계에서는 수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나 해당 위반행위와 검사대상 수산물 간의 관련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특히,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의 확인·통보 또는 자료제공 근거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검사 제한 대상의 누락, 기관별 판단 차이 및 처리 지연 등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형 확정 사실과 위반 사업장·어선, 위반 기간 등 검사 제한에 필요한 정보를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노동 인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강제노동 수산물을 확인하는 즉시 수출 차단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불법 수산물 수출 금지는 관계기관 확인·통보 시점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대한 확인·자료요청 협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⁰⁾을 제시함¹¹⁾.

문 의 처

02)6788-5419

10) [해양수산부 의견]

☐ 수출(정부수매) 검사 제한 시점 : 강제노동 해당 수산물 확인 즉시

○ 강제노동 수산물 확인 즉시 수출 차단 조치 필요 → 관계기관 확인·통보 시점 기준으로 규정

☐ 정부수매·수출 제한 관련, 근로기준법·선원법 위반사실 확인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노동청) 및 선원법-해양수산부(지방청)에 대한 확인·자료요청 근거 마련

11)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 목적

- 주생산 시기의 대중성 어종*을 수매·비축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조절과 가격 안정 도모

* 품목: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천일염·삼치(예비)·마른 오징어(예비)

□ 검사대상

-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검사방법

- 매년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에서 수립하는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 시행요령’의 품목별 수매품 품질 표준에 따라 검사 실시
- 수매 대상품의 품질검사는 수매 중도매인 또는 수협중앙회의 전담 직원 입회하에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실시
- 냉동품 검사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실시하며, 검사 수량은 보관창고의 대표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로 같음
- * 선상 가공품은 수매기관의 냉동보관창고에 보관하며, 부족 시 다른 지역의 창고에 보관할 경우 품질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공판장에서 검사 가능

□ 합격품 포장

- 수매품 포장 조건에 따라 포장한 다음 검사표전을 부착하며, 다만, 선상 냉동품은 검사 필한 후 보관창고에서 포장
- * 검사표전의 부착이 곤란한 품목(골판지상자 냉동품, 선상가공품, 천일염 등)은 상자, PE 비닐, PP포대, PP테이프에 바로 인쇄 부착

□ 불합격품 처리

-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불합격된 제품은 그 결과를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장에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요청

참고 2

수출 수산물 검사 개요

□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제96조(재검사)

□ 검사대상

-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 상대국의 증명서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검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 검사종류 및 항목

- (서류검사) 검사신청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
- (관능검사) 오관에 의하여 외관, 색깔, 이물, 선도 등 적합 여부 판정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중금속, 마비성 패독, 항생물질, 병원성미생물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 검사절차



□ 검사증명서 발급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 위생(건강)증명서 발급
-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 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요구에 따라 발급(위생증명서, 분석증명서 등)

참고 3

수산업법 등 6개 법률 주요 개정안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① 「수산업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제6호 신설>	6.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1항제10호 신설>	10.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제6호 신설>	6.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1항제10호 신설>	10.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③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24조(허가의 제한) <제3호 신설>	3.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허가취소 등) <제1항 개정>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조 항	개정안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제1항 개정>	제49조의2(지원 자금의 회수) ①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④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1항제2호 신설>	2.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⑤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1항 개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⑥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조 항	개정안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1항제18호 신설>	18.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8조(결격사유) <제1항제4호 신설>	4.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선원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적용

□ 선원법

- (징역 또는 벌금)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행위 강요 시
- (과태료) 선박소유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선원법 >

【강제근로 및 괴롭힘 금지】

- ◎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생략)

####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 ◎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소금산업진흥법

- (허가취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행위 강요 시

### < 소금산업진흥법 >

- ◎ 제26조(허가취소 등) ④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호~5호 생략)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